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50
----------	-------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의자 : 표창원 · 이개호 · 박완주  
전재수 · 서영교 · 김영호  
임종성 · 소병훈 · 김철민  
심재권 · 어기구 · 윤관석  
김두관 · 민병두 · 최도자  
유승희 · 문희상 · 박정  
신창현 · 홍의락 · 김정우  
유동수 · 정성호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법누수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의 급증 및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피부착자 가운데 동종 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의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의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피고인의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형사사건 진행 중에 조사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부착 시점에의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종류 및 피부착자의 상태를 고려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등의 통지”를 “등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착명령의 집행 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①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까지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착명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3.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변경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년 6개월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년 6개월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부착명령 집행 전 부착명령의 변경) ① 법원은 제1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부착명령의 변경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변경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부착명령 변경 여부의 결정을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년 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 없이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및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2제1항의”를 각각 “제9조의2제1항·제3항의”로 한다.

제2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성폭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의8 중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부착명령 집행 전 재범 위험성 평가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피부착자 1명당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제2호의2”를 “제2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착명령 집행 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형 또는 치료감호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현 행 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 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포함하 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 다.</p>
<p>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부착명령의 집행 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① 피부 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의 집행 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 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까지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만, 피부착명령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3.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 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 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변경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년 6개월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년 6개월까지 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0조의3(부착명령 집행 전 부착명령의 변경) ① 법원은 제1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부착명령의 변경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변경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부착명령  
변경 여부의 결정을 특정범죄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  
료되기 전 1년까지 하여야 한  
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  
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  
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부착  
명령의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관  
찰소의 장 및 피부착명령자에  
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  
-----  
-----  
-----  
-----  
-----





<p><u>항제3호</u>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생략)</p> <p>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항제2호의2·제3호</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2호</u>----- ----- -----.</p>
---	---